

Website | Archive | Contact

Transfer Pricing Newsletter

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(TP)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.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Google to Appeal India Tax Demand on \$225 Million for Royalties (Bloomberg TP Report vol. 26, no. 14 pg. 585)

인도: 구글, 로열티 간주에 따른 과세처분에 항소

2017 년 10월 23일 방갈로르 소득세 항소심 법원(Bangalore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)은 인도 과세당국이 Google India Private Ltd(이하 "Google India")에게 부과한 USD 2 억 2,480 만(약 2,471 억 원)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, Google India 는 이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

Google India 는 2005 년 마케팅 및 유통 계약(Marketing and distribution agreement)에 따라 아일랜드 소재 특수관계사로부터 광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'AdWords'의 재판매 권한을 받았습니다. 회사는 이를 통해 인도 광고회사들에게 특정 소비자에게 광고물을 노출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2011 년 인도 과세당국은 Google India 가 아일랜드 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 권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을 원천소득 과세대상인 로열티거래로 간주하였으며, 이와 관련하여 동 세원에 대해 증액경정하였습니다. 이에 Google India 가 항소하며 약 6 년간 조세분쟁이지속되었습니다. 마침내 2017 년 10 월 방갈로르 소득세 항소심 법원은원심을 인정하였고, Google India 가 아일랜드 소재 특수관계사에 판권

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

27 November 2017

KEY CONTACTS

강길원 전무이사(본부장)

(Tel: 02-2112-0907)

김상훈 상무이사

(Tel: 02-2112-7939)

백승목 상무이사

(Tel: 02-2112-0982)

허여 대가로 지난 6 년간 지급한 USD 2 억 2,480 만(약 2,471 억 원)을 로열티 즉, 과세대상으로 판결하였습니다.

인도 과세당국 입장

인도 과세당국은 Google India 가 'AdWords'를 판매하는 행위를 단순 광고공간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, 'AdWords'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국외 소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성격을 광고공간 거래가 아닌 로열티 거래로 분류하였습니다.

Google 입장

Google India 는 Google 소프트웨어의 비독점재판매업자(non-exclusive authorized reseller)로서 Google 사의 지적 재산에 대해 권리가 없으며, 인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타 기업의 경우 국외 소재 회사에게 디지털 제품에 대한 대가 지급을 로열티로 보지 않은 판례들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.

주요 쟁점사항

전문가들은 인도-아일랜드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(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s)에 명시된 로열티 정의 및 해석, 해당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'AdWords'가 중대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지적 재산(Intellectual Property)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으며, 관할 항소심 법원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Hungary: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updated, including arm's length pricing

헝가리: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업데이트

형가리 국가경제부(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, 이하 "NGM")이 지난 10월 발표한 새로운 이전가격문서화 규정(이하 "NGM Decree")가 2017년 11월 18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. 이는 기존 이전가격문서화 규정(이하 "Decree 22/2009")에 대한 몇 가지 수정 및 보완사항을 포함합니다.

NGM Decree 은 최근 글로벌 BEPS 동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이전가격보고서(이하 "TPD")를 Master file (이하 "MF") 및 Local file (이하 "LF")로 대체하였습니다.

NGM Decree 에는 MF 작성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(Threshold)는 제시되지 않았고, 현재로서는 기존에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던 기업들이 모두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.

MF 에는 그룹 내 법인 현황, 지배구조, 그룹의 가치사슬, 특수관계사간 약정내용, 법인 별 기능분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LF 에는 납세자의 조직구조, 주요사업 및 사업전략, 주요경쟁사, 특수관계거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MF 와 LF 의 구비기한은 법인세 신고일까지 입니다. 다만, 그룹의 최종 모회사 소재국의 MF 규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연도의 MF 를 법인세 신고일까지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의 MF 구비기한 전까지 구비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납세자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.

MF, LF 의 첫 적용대상연도는 2018 사업연도이므로 2017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는 기존 Decree 22/2009 를 따라야 합니다. 다만, NGM Decree 를 2017 사업연도에 미리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.

이외에도 NGM Decree 는 경제분석이 최소한 3 년에 한번씩 수행되어야하며, 선정된 비교가능거래 및 회사에 대한 재무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규정합니다. 또한 그룹간 저부가가치 용역(Low value-added intra group services)에 대하여 $3\sim10\%$ mark-up 을 정상가격으로보고 있습니다.

India: Back-Office Functions Won't Trigger Company Residency (Bloomberg TP Report vol. 26, no. 14 pg. 585)

인도: 경영자문 기능은 실질적 관리장소 요건에 해당 안됨

인도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이 인도 내에서 일반적인 '저부가가치경영자문(Back Office)' 업무를 수행 시 실질적 관리장소(Place of Effective Management)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, 이에 대한 해석을 남용할 경우,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(General Anti-Avoidance Rule)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인도 과세당국에서 고시한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FY2016-17 부터 적용되며,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내 사업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성립요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

인도 직접세 중앙위원회(Central Board of Direct Taxes)에서는 인도 내에서 수행하는 회계, 인사, 급여, IT 인프라 및 일반적인 은행 업무 등 단순지원기능은 실질적 관리장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글로벌 사업소득에 대해 인도 측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실질적 관리장소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회계 (Accounting Function)
- IT 인프라 및 네트워크 플랫폼 (IT Infrastructure & Network Platform)
- · 공급사슬관리 (Supply Chain Function)
- 일반적인 은행업무 (Routine Banking Operational Procedures

전문가들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원가경쟁력이 있는 인도에 저부가가치 경영자문 기능을 두고 싶어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, 자칫 실질적 관리장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

CRA Releases 2016 APA Report

캐나다 과세당국, 2016년 APA 연차보고서 발표

2017 년 11 월 캐나다 과세당국(Canada Revenue Agency, 이하 "CRA")에서 2016 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(Advance Pricing Arrangement, 이하 "APA") 연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.

동 보고서에 따르면 CRA는 미처리 상태의 APA 건들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실제로 2016 년 초 107 건의 APA 건들이 미처리 상태였지만, 2016 년 중 26 건이 완료되었고, 3 건은 철회, 12 건은 신규 신청이 받아 들여져 90 건 만이 2016 년 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CRA는 APA 처리기간을 줄이고자 APA 사전신청단계에서의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

또한 CRA 는 15 개국(미국, 영국, 스위스, 한국, 일본, 독일, 네덜란드, 아일랜드, 스웨덴, 인도, 중국, 포르투갈, 덴마크, 칠레, 오스트리아)의 과세당국과 양자간 혹은 다자간 APA 를 진행 중에 있으며, 특히 진행 중인 APA 의 약 56%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

현재 진행 중인 APA 의 절반 이상은 재화거래와 관련된 건 입니다. 또한 현재 진행 중인 APA 의 90%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APA 이며, 이 경우, APA 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47.3 개월(약 4년) 로 나타납니다.

APA 란?

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APA 는 납세자들에게 하기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

- 1) 세무조사 대응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문제를 해결
- 2)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문제를 제거
- 3)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방법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

4)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할 필요 없음

Back to top

Privacy | Legal

INTERNAL USE ONLY

27th Floor, Gangnam Finance Center, 152, Teheran-ro, Gangnam-gu, Seoul, Korea

© 2017 Samjong KPMG ERI Inc.,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("KPMG International"), a Swiss entity. All rights reserved.

kpmq.com/socialmedia











kpmg.com/app

